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71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전종덕 · 김재원 · 손 솔
임미애 · 윤종오 · 정혜경
장종태 · 김 윤 · 최혁진
송옥주 · 이수진 · 김종민
의원(12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의 증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에너지전력망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공공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육성은 재생에너지 생산·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확대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

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노동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등의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수행능력,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공공사업시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공급 등을 위하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29조).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지원 및 이익 환원·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기능과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 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제18조에 따른 개발실시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이하 “도시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6. “분산형전력망지구”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및 그 밖에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7. “산업시설지구”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집적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8. “배후정주지구”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

한다.

9. “입주기업”이란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라 한다)”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제29조에 따른 전기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1.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2. “공공사업시행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 과정에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육성을 통

해 창출된 성과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송전·변전설비의 확충, 계통관리설비의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기본계획,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실시계획, 제5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원칙)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생산·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2.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산업시설지구·배후정주지구 등이 연계된 복합도시의 조성
3. 지역 내 성장유망산업 유치 기반 마련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5.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확대

제6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운영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노동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
4. 제5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5.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입주기업의 유치 및 투자 지원
7.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에너지자립률 제고 사업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0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업·재생에너지공급·정주시설 등의 연계가 용이할 것
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직접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공동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의 필요성
 3.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연계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산업유치계획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계획
 -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 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 다.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8. 산업기반시설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

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개발하는 방식 또는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지구를 포함한 일부를 지정·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공동지정권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변경지정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한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해제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사업시행자(제17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분산형전력망 지구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위제한 등)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도시연계사업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동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반영한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 및 채투자)

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생에너지자립 도시의 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25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의 공급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의 세입
4.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공유 및 주민 복리의 증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과 재투자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등의 사업시행자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사업시행자(이하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발전단가 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수행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5. 공공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요소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

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이하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선정한다.

제18조(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 및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회의
2.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결과에 따른 협의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5.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다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7.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5.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6.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장허가
- 3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3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39.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 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사업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

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제를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산업기반시설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재생에너지 및 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

제26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지정된 이후 해당 지구에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이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

정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와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3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판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같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 방식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전기 등의 공급

④ 제2항에 따른 전력공급계약의 체결 방법·절차, 공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복수의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시설지구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 및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통해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기의 구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통한 전력의 거래

⑤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의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를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및 제5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전기판매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공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전력계통연계) ① 「전기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배전사업자(이하 “송전·배전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연계된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신규 전력수요(산업시설지구 외 전력수요를 의미한다)와 체결하는 전력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맞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31조(부족전력의 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이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의 방식으로 공급받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전기 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전기를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급

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2조(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로 허가·협의·신고 등이 된 농지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임차인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의 범위 및 관련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국·공유재산의 매각)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제34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가 분산형전력망지구 내에 송전·변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자립 제고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감축 비율
2. 전력계통 효율성 제고 및 안정화에 대한 기여도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

화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신의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거나 공공성, 안정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39조(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안보 요소를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원

제4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41조(임대전용용지의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전용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용지의 공급·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에 따른다.

제42조(부담금 감면등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제43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기술개발사업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보육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교육재정 지원의 특례)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전학·입학의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용자를 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49조(의료기관 지원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산업시설지구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산업시설지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시설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업시설지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

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지연되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운영, 재생에너지의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산업통상부장관은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회신한 인·허가권자는 회신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 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자격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공장 부대시설의 개념

제6장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

제53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원센터가 된다. 다만, 지원센터는 산업시설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관리권자는 승인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위치 및 면적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및 교통 시설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함)
7.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 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로 구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산업시설지구 등에 대한 관리) ① 산업시설지구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본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제55조(입주계약) 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제54조제3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산업시설지구(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시설지구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6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55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이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입주기업이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7조(건축물등의 양도) ① 입주기업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제55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5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9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

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0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관리기관은 제55조(제57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업이 소유하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1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5조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

제62조(온라인지원시스템의 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64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토지를 이용한 수익금 및 제16조에 따른 수익금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송전·변전설비 구축·운영 비용

4. 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의 비용

5.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6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8. 제65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의 조성·운용

9.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재생

에너지자립도시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지원 및 이익 환원·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공공복리 증진사업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채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3. 제3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의 운용·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할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70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 및 지원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센터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2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42조, 제51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사업시행자 및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임직원
3. 지원센터의 임직원
4. 제7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5조(제57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선에너지자립도시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55조제1항후단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71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	--------------------------------------	-----------